

#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9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권영희,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임종국,  
전병주, 최 선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효과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율적인 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의 봉사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조례 내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녹색어머니회와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원 시책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와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서울특별시녹색어머니연합회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이하 "녹색어머니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3. 교육감 등으로부터 활동 관련 시정권고를 받고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교육감은 녹색어머니회 등의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